

1. 개정이유

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 시 재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 개보수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사 기한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개선
- 나.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에 포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5. 2. 24. ~ 4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
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로부터
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태양광발전설비의 부
지 및 구조물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27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5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
군사시설 보호구역
6.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한 지역
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

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정기검사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 <신설>	제8조(정기검사의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<u>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)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격지·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 <신설>	제27조(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.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한 지

5.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 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	<u>역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2조 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이 위치한 지역</u> 7. (현행과 같음)
---	--